

■ 최신 판례 ■

[도산] 회생절차 개시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

배성진 변호사 | 서준희 변호사

1. 사실관계

甲 주식회사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처분사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. 그런데 2심의 제1회 변론기일 전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2심 법원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甲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.

이에 甲 주식회사의 2심 대리인은 甲 주식회사를 상고인으로 표시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고, 甲 주식회사의 관리인은 상고심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한 후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2심 판결의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를 다투었음.

2. 쟁점

-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이 "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"에 해당하는지 여부
- 甲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함으로써 2심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

3. 판시사항

- (1)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"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."고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,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

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위법이 있다.

- (2) 甲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소송 계속 중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여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, 甲 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위 소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의 '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'에 해당하여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,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사례.

4. 해설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이하 "채무자회생법") 제59조 제1항은 "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."고 규정하고 있는데, 대법원은 종전부터 '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,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위법이 있다.'고 판시하여 왔습니다.

본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"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"라 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는데, 대법원은 '甲 주식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과징금 부과 및 액수 등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.

나아가 대법원은 종래 2심의 원고 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면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소송수계가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절차상의 위법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자 원고가 상고심에서 2심의 소송대리인과 동일한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원고의 관리인이 종전 소송절차를 모두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(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두28776 판결), 본건에서는 甲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2심 대리인을 상고심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거나 수계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그와 같은 절차상 위법을 추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. 이는 본건에서는 추인권자인 甲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2심의 절차상 하자를 상고이유로서 명백히 다투었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5. 다운로드 : [대법원 2012. 10. 11. 자 2010마122 결정](#)